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무권리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에는 고안자의 추가·정정 신청 시 실용신안권자 등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용신안권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핵산염기 서열 등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서열목록 등을 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서열목록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추가하여 출원인의 심사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6.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2제4호”를 “영 제6조의2제1항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9호나목 중 “적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송달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4조의2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 ----- ----- ----- ----- ----- -----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

1. ~ 7. (생략)

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
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
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
지의 기간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